

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 2966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. .
제 출 자 유영숙의원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상 수집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정비하여 별지서식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원심사규칙 목적의 인용조문 변경시함.(안 제1조)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 → 제59조

나. 별지서식의 기재 사항 변경(안 제2조, 안 제14조)

- 서식(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철회요구서)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01. 14. ~ 2022. 01. 18.

나) 예고결과 :

2) 부서협의 : 해당없음.

3) 관련부서 : 해당없음.

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경기도 「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」”를 “「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7조 (준용규정)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「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」와 「김포시의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7조 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「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.</p>